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2(목) 10:00

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68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2. 28.
- 라. 회부일자 : 2020. 3. 2.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 제정 이후 현재 까지 구성·운영한 바 없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이용 기준을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삭제함(안 제10조제4항)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 삭제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 다.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의 행위로서의 해석상의 혼란이 없도록 자전거 대여소의 무료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0조제5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 2020. 2. . ~ 2020. 2. .(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개정조례안 제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정책 실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나.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4항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실제 구성·운영한 바 없는 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 안 제10조제5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예외 조항에 해당 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음

나.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3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부칙 <제14913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